

문서번호	BSKS-3-1-42
제정일자	2006.01.24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1/6

2006.01.24.제정 2009.02.09.개정 2011.12.01.개정 2016.04.01.개정 2019.07.16.개정 2022.04.15.개정

소관부서 : 사무처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부산경상대학교의 교육, 연구 및 장학 활동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한 후원금품의 조성과 운영·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.

- ① 후원금품이라 함은 대학의 고유목적 사업인 교육, 연구 및 장학 등 대학발전을 위해 무상으로 기부한 현금, 유가증권, 부동산 및 기타 재산가치가 있는 물품 등을 말한다.
- ② 대학발전후원금이라 함은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 수입과 그 수입을 통해 조성된 적립금을 말한다.
- 제3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대학발전후원회에 적용하며, 후원회를 통하지 않는 후원금품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.

제 2 장 대학발전후원금 모금 사업 및 운용·관리

제4조(대학발전후원금 모금사업) 대학발전후원금 모금사업은 후원회에서 주관한다.

- **제5조(대학발전후원금 종류)** 대학발전후원금은 기부자의 기부 의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 - ① 후원자가 용도를 별도로 지정하지 아니한 후원금은 일반발전후원금으로 한다.
 - ② 후원자가 특별한 용도를 지정한 후원금은 지정발전후원금으로 한다.
- 제6조(대학발전후원금 관리 및 운용) ① 후원회에서 모금된 대학발전후원금은 전액 회계부서 에 입금하여야 하고 후원회는 후원자 명부, 약정부, 후원금입금 출납부 등을 작성하여 특별관리 한다.
 - ② 대학 회계부서는 후원금 관리에 따른 증식 등의 변동내역을 후원회에 통보한다.
 - ③ 일반발전후원금의 사용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집행하며, 지정발전후원금은 후원회의 심의를 거쳐 후원자가 지정한 목적에 따라 총장이 집행한다.
 - ④ 대학발전후원금의 수입·지출의 증빙은 교비회계 규정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



문서번호	BSKS-3-1-42
제정일자	2006.01.24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2/6

제 3 장 후원자에 대한 예우

- 제7조(후원자에 대한 예우) 대학발전후원금 후원자에 대하여는 후원자의 고귀한 뜻을 받들고 감사의 표시를 위해 별도로 정한 세부지침에 따라 적절한 예우를 한다.
- **제8조(대학발전후원금 영수증 발급)** 대학발전후원금 및 후원금품을 후원한 자에게 발급하는 후원금 영수증은 대학의 총장 명의로 발급한다.

제 4 장 대학발전후원회 구성 및 운영

- 제9조(구성) ① 후원회의 고문은 대학의 총장으로 한다.
 - ② 후원회의 회장은 총동문회에서 추천한 졸업 동문으로 한다.
 - ③ 후원회는 대학 사무처장과 총동문회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며, 총장이 추천하는 교직원 2인, 총동문회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는 총동문회 임원 7인, 지역인사 또는 학부모 약간 명 등으로 구성한다.<개정 2019.07.16.>
 - ④ 후원회에 총장이 추천하는 간사 1인을 둔다.
- 제10조(기능) 본 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 - ① 대학발전후원금의 모금, 운용 및 집행에 관한 사항
 - ② 대학발전후원금 조성을 위한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
 - ③ 대학발전후원금 후원자에 대한 예우 및 관리에 관한 사항
 - ④ 기타 대학발전후원금에 관한 중요사항
- 제11조(임기) 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 으로 한다.
 - ②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제12조(운영소위원회) ① 대학발전후원금 모금 및 후원회 홍보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회 장은 대학발전후원회 산하에 운영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- ② 운영소위원회는 대학발전후원회 위원 중 회장이 임명하는 동문위원 2명, 교직원 위원 2명, 외부위원 1명, 간사 1명으로 구성한다.
 - ③ 운영소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 - 가. 대학발전후원금 모금 및 후원회 홍보와 관련하여 후원회에서 위임한 업무
 - 나. 기타 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회장이 부의한 업무
- 제13조(각종위원회) ① 후원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대학발전후원회 산하에 단위별로 각종위



문서번호	BSKS-3-1-42
제정일자	2006.01.24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3/6

원회를 구성 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각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.

제 5 장 회 의

제14조(회의) ① 회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- ② 회의는 회장 또는 위원 1/3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.
- ③ 회장은 회의 개최 7일전에 안건을 명기하여 위원에게 통보한다. 단, 긴급 시는 예외로 할 수 있다
- ④ 회의는 재적위원 1/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1/2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6 장 재 정

제15조(운영비 및 경비) 대학발전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에 의하여 충당한다.

- ① 부산경상대학교의 보조금
- ②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12조 제3항에 의거 기부금품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의 금액

제17조(회계 연도) 대학발전후원금의 회계연도는 부산경상대학교 회계연도와 같다.

제18조(결산보고) 대학발전후원금의 결산은 부산경상대학교 교비회계 결산보고와 같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6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대학발전후원회에 적용하며, 대학발전후원회를 통하지 않는 후원 금품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고등교육법 제14조①항 개정(법률 제9356호)과 관련하여 2009년 2월 9일부터 '학장'을 '총장'으로 한다.



문서번호	BSKS-3-1-42
제정일자	2006.01.24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4/6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고등교육법 제18조 ②항 개정(2011.07.21.),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과 -8845(2011.11.17.)호에 의거하여 2011년 12월 1일부터 "부산경상대학"을 "부산경상대학 교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2.04.15.)에 의하여『학생산학취업처』를『산학처』로,『기획처』를『기획실』로,『입학홍보처』를『입시홍보실』 명칭 변경하고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

문서번호	BSKS-3-1-42
제정일자	2006.01.24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5/6

■ 대학발전후원금 후원자 예우에 대한 세부 지침 ■

회 원 명 (후원금액)	예 우 내 용	비고
브론즈회원 (10만원 이상)	 감사 서신 발송 대학소식지 발송 도서관 무료 사용	
실버회원 (100만원 이상)	 감사패 증정 대학소식지 및 수첩 발송 도서관 및 강당 등 대학시설 무료 사용 운정연수원 무료 사용(년 3일이내) 대학행사 초청 : 기념품 제공 	
골드회원 (500만원 이상)	 감사패 증정 대학소식지 및 수첩 발송 도서관 및 강당 등 대학 시설 무료 사용 운정연수원 무료 사용(년 7일이내) 대학행사 초청 : 기념품 제공 총장 주최 만찬 초청 : 년1회 	
잔메사랑VIP회원 (1,000만원 이상)	 감사패 증정 대학소식지 및 수첩 발송 도서관 및 강당 등 대학 시설 무료 사용 운정연수원 무료 사용(년 15일이내) 대학행사 초청 : 기념품 제공 총장 초청 만찬 주최 : 년 1회 대학 내 동판에 이름 각인하여 영구 보존 	
	· 강의실, 실습실 등 건물과 시설물을 지을 수 있도 록 기부하신 분께는 상기 예우 외에 건물 또는 시설물에 원하시는 이름을 부여함	



문서번호	BSKS-3-1-42
제정일자	2006.01.24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6/6

■ 부산경상대학교 발전후원금 약정서 ■

	성	명(기관명)	생년월일/사업자등록번호
亨		구 분	동문() 학부모() 재학생() 교직원() 일반()
	관	동 문	학과 : 입학/졸업년도 : /
	계	학 부 모	학생성명 : 학과 : 입학년도 :
원		교 직 원	소속: 직위:
인	۸۱	자택주소	전화번호
T.	연 락	직장주소	전화번호
	처	직 장 명 (대표자명)	부서·직위
		E-Mail	휴 대 폰
	후 원	년 금 액	일금 원정 (\)
中紀陽明	ত্	현 금	원 부 동 산 원
형 태	フ	기 타	원
ዾ	Ò	빌 시 납 부	20 년 월 일
출 연 방 법	년 건	분 할 납 부	20 년 월 일 ~ 20 년 월 일 ()회분할
		무통장입금	□ 부산은행 : 088 - 01 - 025 - 1885 예금주 : 부산경상대학교
기금		학교에 위임	
목적		목 적 기 금	용도 :

※약정방법 ① 약정서를 작성하신 후 팩스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.

② 대학홈페이지(http://www.bsks.ac.kr)에 온라인 약정을 이용하셔도 됩니다.

위와 같이 후원(약정)합니다.

년 월 일

후원(약정)인:

(1)

■ 기금문의 : 47583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 170 (연산8동277-4)

부산경상대학교 발전후원회

전화 051)850-1000 / 팩스 051)862-7577 / http://www.bsks.ac.kr)